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2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9.

발 의 자 : 남인순 · 서영석 · 김 윤
오세희 · 김예지 · 김남희
김준혁 · 이주희 · 김남근
이수진 · 윤후덕 · 전종덕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, 친생부모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따르면 친생부모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입양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친생부모와의 교류를 촉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가 입양정보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함(안 제33조제2항).
- 나.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에 친생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함(안 제33조제3항).
- 다.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친생부모의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).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 본문 중 “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”를 “보유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다만,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”을 “다만, 친생부모가 입양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친생부모의 사망
2.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, “자료”를 “자료·정보”로 한다.

- ②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

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친생부모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40조제1항제3호 중 “제35조제2항”을 “제35조제3항”으로, “자료”를 “자료·정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④ (생략)

제35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(생략)

<신설>

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40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2. (생략)

3.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이 법에 따른

우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「전과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친생부모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-----
----자료·정보-----

제40조(벌칙) ① 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35조제3항-----
-----자료·정보-----

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	-----
사용한 자	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